제35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

2015. 10. 30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1. 회의개요

○ **일　　시** : 2015년 10월 30일(금) 14:00~

○ **장　　소** :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(916호)

○ **출석위원**(12명)

-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서 동 원(주재)

- 민간위원 : 김민호, 김영수, 김용하, 김종일, 김태윤, 손원익, 신용현, 전의찬, 한경희 위원

- 정부위원 : 국무조정실, 법제처

2. 상정안건

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2015-417	복지부	의료법 개정안	의결안건

3. 심의 · 의결사항

나. 「의료법」(제2015-417호)

1 간호지원사의 자격요건 (개정안 제80조, 제80조의2, 제80조의3, 부칙)

□ 심의내용

○ **간호지원사 양성체계 재설계**(개정안 제80조, 제80조의3, 부칙)

- (현행)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(자격) 시험에 합격

⇒ (개정) 간호지원사(**간호조무사 → 간호지원사 명칭변경**)가 되려는 사람은 **복지부장관이 평가하여 인정한 교육기관**을 졸업하고 **1(면허)/2급(자격) 간호지원사** 시험에 합격

※ 현행 간호조무사는 일괄 2급으로 전환하고 일정 요건(의료기관 5년 경력(병원급 이상 1년 포함), 교육이수, 1급 시험 합격 등)을 갖춘 경우 1급 면허를 취득(부칙)

○ **간호인력의 업무범위 근거 마련**(개정안 제2조, 제80조의2)

- (현행) 간호지원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

⇒ (개정) **간호사는 간호지원사를 지도·감독**, 간호지원사는 **간호사의 지도** 아래 간호 업무를 보조*

* 다만,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,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
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의 지도 아래에서도 간호 업무에 종사

< 신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의료인) ① (생 략)	제2조(의료인) ① (현행과 같음)
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.	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.
1.~4. (생 략)	1.~4. (현행과 같음)
5. 간호사는 상병자(傷病者)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.	5. **간호사**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. 가. 간호가 필요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, 자료수집, 평가, 간호계획의 수립 등 요양상의 간호 나.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아래 처치, 주사 등 진료의 보조 다.「결핵예방법」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. 가목에서 다목의 업무에 대한 제80조의 **간호지원사 지도·감독**
제80조(간호조무사)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·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.	제80조(간호지원사) ① 간호지원사는 **1급 간호지원사와 2급 간호지원사로 구분**한다.
②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, "면허"는 "자격"으로, "면허증"은 "자격증"으로 한다.	② **1급 간호지원사**가 되려는 사람은 제80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 평가하여 인정한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, 보건복지부장관의 **면허**를 받아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·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③ 2급 간호지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0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 평가하여 인정한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이수하고 2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,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
<신 설>	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간호지원사의 국가시험, 면허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신 설>	제80조의2(간호지원사의 업무) ① 간호지원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**간호사의 지도** 아래 제2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**업무를 보조**할 수 있다. 다만,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,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지원사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**의원급 의료기관**에서는 **의사,**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**지도** 아래에서도 제1항에 따른 **업무에 종사**할 수 있다. ③ 1급 간호지원사 및 2급 간호지원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신 설>	제80조의3(평가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(이하 "인정기관"이라 한다)은 **간호지원사 교육기관**의 신청에 따라 **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**하여 **인정**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**관계 전문기관을**

현 행	개 정 안
	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③ 인정기관은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④ 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정, 인정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**부 칙**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**2018년 1월 1일**부터 **시행**한다. 다만, 제80조의 개정규정 중 **전문대학 이외의 교육기관**에 관한 부분은 **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**한다. 제2조(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2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 ②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(전문대학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, 전문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)최초로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간호조무사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**간호조무사**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**2급 간호지원사 자격**을 **취득**한 것으로 본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

현 행	개 정 안
	종전의 규정에 따라 **간호조무사**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**1급 간호지원사 면허를 취득**할 수 있다. 1. **의료기관 근무 경력이 5년** 이상일 것(**병원**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경력 **1년**을 포함한다) 2.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**교육과정을 이수**하였을 것 3. **1급** 간호지원사 국가**시험에 합격**할 것 제4조(간호지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. 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'간호조무사'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'간호지원사'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□ 주요발언

○ (OOO위원)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배경은?

더불어, 당초 규개위 결정은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토록 하는 것이었는데, 갑자기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1급 면허까지 부여토록 제도를 마련한 배경은?

⇒ (복지부) 대한간호조무사협회, 대한간호사협회, 대한병원협회는 기본적으로 정부안과 뜻을 같이함

⇒ (복지부)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소, 간호조무사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인력 전반에 대해 개편하려는 것임

전문대학과 간호학원 등에서 배출된 인력을 1/2급으로 구분하되, 1급은 병동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간호를, 2급은 현재와 같이 의원급에서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큼

더불어 간호조무사(간호지원사) 양성기관(전문대학, 학원 등)의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·인정하려는 것임

○ (OOO위원) 간호대학 정원 확대로 간호사 인력이 많이 배출될 예정이고 포괄간호 서비스가 전면 도입되는 것도 아닌데 간호인력이 왜 부족한 것인지?

1급 간호조무사(간호지원사) 신설로 간호사(병원급 이상 근무) 및 기존 간호조무사(의원급 근무)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되는데,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기대하는 이익은 무엇인지?

세계적 트렌드는 자격에 급수를 나누지 않는 것이고 간호조무사 협회의 의견서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내용이 있던데 이를 검토하였는지?

⇒ (복지부) 수도권·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중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인력이 부족(약 2만명)하며 법정 기준도 채우지 못한 실정임

간호대학 정원을 1만명에서 1.8만명으로 증원했으나 간호인력 수급을 장기(5년) 추계해 보면 향후 16~18만명이 인력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

수도권 의료기관보다 인건비 수준이 더 높아도 지방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

더불어,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 대비 등을 위해 도입된 포괄간호 서비스가 향후 확대된다면 간호인력 부족은 더 심해질 것임

⇒ (복지부) 간호업무의 특성 상 낮은 수준의 간호 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간호조무사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간호 인력 부족을 보완(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낮은 수준의 간호업무 담당)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임

⇒ (복지부) 미국·일본도 이번 개정안과 같이 3단계 간호인력 체계를 갖추고 있음

○ (OOO위원) 지방 중소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것인지, 간호조무사가 부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

⇒ (복지부) 간호사가 부족함

⇒ (복지부) 지방에서는 간호사, 조무사 모두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휴간호사(출산 등 경력단절 간호사) 중 40대 중반의 젊은 간호사의 재취업을 위해 보수교육 등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당분간 간호사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움

○ (OOO위원) 간호사 인력으로 충원된 서울 소재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간호사 대신 1급 간호조무사(간호지원사)가 채용된다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은지?

⇒ (복지부) 1급 간호지원사가 간호사를 대체한다고 해서 간호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없다는 판단임

간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·규정하여 위임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1급 간호지원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할 수 없음

○ (OOO위원) 향후 전문대학 출신의 간호조무사가 양성된다 해도 간호조무사를 1/2급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나?

⇒ (복지부)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입원실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음. 특히, 의료용어에 대한 소통 등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임. 1/2급 구분의 이유는 전문대학 2년 과정을 거친 후 입원실에서 간호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○ (OOO위원) 간호사의 대체 인력으로 1급 간호지원사를 공급할 경우 입원실에서 할 수 있는 간호지원사의 역할은?

⇒ (복지부) 난이도가 낮은 업무 중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위치 변경,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하는 업무 등을 1급의 업무로 고려하고 있음

⇒ (복지부) 어느 정도 수준의 간호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것은 간호사가 하고 위험도가 떨어지는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음

○ (OOO위원)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?

⇒ (복지부)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평가·인증 규정을 포함시켰음. 아울러, 학원은 10개월, 전문대학은 2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교육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기관·내용에 맞는 업무와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

○ (OOO위원) 전문대학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을 요구한 것이지 1급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?

⇒ (복지부) 미국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RN(Regular nurse), 2년제 졸업자는 LPN(Licensed practical nurese), 그 이하인 자는 CNA

(Certificate nursing aide)으로 구분하고 일본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규개위에서 전문대학 교육을 허용하였으므로 거기에 맞게 체계를 재설계 한 것임

○ (OOO위원) 당초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 양성에 복지부가 반대하지 않았는지?

⇒ (복지부) 간호조무사 및 간호사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 관련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대 양성인력 배출은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대하였음 그러나, 규개위 결정으로 전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여 관련 제도를 재설계함

○ (OOO위원)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을 마련한 사유는? 간호조무사 사람 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상당한 갈등 유발 소지가 있음

⇒ (복지부) 개인에 대한 지도·감독 의미가 아닌 간호사 업무 자체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의미하는 것임

⇒ (복지부)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의 진료업무 보조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현행과 같이 하면 되고, 병원의 입원실 안에서는 간호사의 책임 하에 1급 간호지원사가 보조하게 되므로 간호사의 지도·감독이 필요함

○ (OOO위원) 2급 간호지원사가 1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요건 중 병원급 이상 1년 경력은 삭제 가능한지?

⇒ (복지부) 1급 간호지원사는 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해 간호를 보조해야 하므로 병원 근무경력이 필요함

다만,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있으므로 병원급의 인정 폭을 넓히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

○ (OOO위원) 전문대학 2년 과정의 전문과목 이수가 10개월의 간호조무사학원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단정짓고 자격보다 높은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?

⇒ (복지부) 2년제 전문대학의 실습시간 및 커리큘럼을 면허 수준에 맞게 구성할 예정임

○ (OOO위원)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내용은?

⇒ (복지부) 정부안과 차이는 간호조무사(간호지원사)의 1/2급 구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.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신경림 의원안과 병합 심의 될 것임

○ (OOO위원) 지방 병원 및 의원은 인건비 때문에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를 쓰고 있고 현재 간호조무사는 충분히 배출되고 있다고 생각함.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니까 1급 간호조무사(간호지원사)를 만들어서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 할 수 있도록 하면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?

⇒ (복지부) 일부 그런 판단도 하였음

○ (OOO위원)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병원에서의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중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

○ (OOO위원) 1급 간호조무사 양성을 통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의도하지만,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

병원 또는 대형병원에서도 간호사가 1급 간호조무사로 대체될 우려가 큼
1급 간호조무사를 신설하기 보다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함
4년제는 간호사, 2년제는 1급 간호지원사, 학원 등 졸업자는 2급 간호지원사로 학력을 통해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

○ (OOO위원) 미국·일본의 3번째 단계는 간병인이지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볼 수 없음

○ (OOO위원)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불안전하고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 협의도 불충분하므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안은 숙성이 필요함

○ (OOO위원) 현재도 간호대학 졸업자가 현장 실습하기가 어려운데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현장 실습 등은 더 어려울 수 있음

○ (OOO위원) 간호조무사 면허제도 도입은 심각한 규제라는 판단이며, 기존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낮추는 것은 상대적 지위 격하로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는 생각임
외국과 같이 간호 경험의 축적을 통해 3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적절하다는 판단임

□ **심의결과 : 계속심사**

○ 보건복지부의 문제의식은 공감하나, 해결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同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

-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부족

- 간호조무사의 명칭변경 및 1/2급 구분의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

- 2년제 전문대학 출신 간호지원사에 대한 차등적 대우 필요성 검토 미흡

- 해외사례(3단계 간호인력 체계) 검토의 객관성 미흡

- 1급 면허제도 도입의 규제적인 성격(시장진입 장벽 도입)을 고려,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